

# 조세 재정

2016. 8. 26(통권 제34호)

# BRIEF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 BRIEF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안종석 선임연구위원(044-414-2210)

I. 배경 및 문제점 .....	02
I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	03
II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	08
IV.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	12
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	16
V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20



## I 배경 및 문제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1조의7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비판이 제기됨
  - 이 감면제도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분야에 대한 투자, 대규모 외국인투자, 특정 지역에서의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외국인의 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효과가 있음
    - 투자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 세계화 사회에서 내국인을 배제하고 외국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내국기업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다른 국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외국인에게만 제공하는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음
  - 투자규모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서 고용 등 사회적으로 보다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음
- ● 이와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에 기획재정부의 용역사업으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음(안종석 · 정재호 · 최기호, 2014)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가 지원목적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함
- ● 2015년에는 2014년의 심층평가에서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토대로 단기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입법화됨(안종석, 2015)
  - 고용친화적 외국인투자 유도를 위해 조세감면 한도에서 고용기준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 내국인이 우회투자를 통해 조세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조세지원대상 외투기업의 내국인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개편을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하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액의 68.5%(2014년, 증자감면 제외)를 차지하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이 제도의 개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제도는 1984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음
    - 이후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그 외에 큰 변화 없이 제도가 유지되었음

## I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

### 1.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 절차 등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의미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음
    - 설립 이후 5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음
  - 그 외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됨

-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도 5년간 감면됨
- ● 지원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사업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 고도기술수반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 고시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의 <별표 1>에 고시됨
  - 2016년 6월 현재 고도기술사업은 9개 분야 117개 부문의 497개 사업이 고시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10개 분야 48개 부문의 153개 사업이 고시되어 있음
-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고시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외국에서 국내로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 ● 감면결정 절차를 보면,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에 접수되며, 대외경제총괄과에서는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별표 1>에

### 명시된 해당 기술의 소관부처에 검토를 요청함

- 해당 부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산업파급효과, 기술의 진부화 정도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재정부는 그 검토의견을 토대로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함
  - 소관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과 그 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 고도기술수반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이 비감면사업에서 생산되는 최종재의 중간재가 되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감면대상 공정과 비감면 공정에 귀속되는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2. 지원대상 사업의 고시

- 2016년 6월 현재 고도기술사업은 9개 분야 117개 부문의 497개 사업이 고시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은 10개 분야 48개 부문의 153개 사업이 고시되어 있음(〈표 1〉 참조)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7개 부문 92개 기술,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26개 부문 71개 기술, ‘재료, 소재분야’ 15개 부문 77개 기술, ‘항공, 우주, 수송분야’ 14개 부문 55개 기술, ‘환경, 에너지 및 자원분야’ 15개 부문 95개 기술 등이 고시됨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분야’가 12개 부문 37개 사업이 고시되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2개 부문 28개 사업,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 9개 부문 22개 사업 등이 고시됨

〈표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분야별 고시된 기술 수

(단위: 개)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	부문	기술	분야	부문	기술
1.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7	92	1.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4	17
2.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26	71	2. 엔지니어링 서비스	1	11
3. 재료, 소재분야	15	77	3. 어업 관련 분야	2	3
4.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	19	47	4.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	5	12
5. 광학, 의료기기 분야	4	15	5. 광학, 의료기기 분야	1	2
6. 항공, 우주, 수송분야	14	55	6. 수송분야	2	3
7. 환경 에너지 및 자원	15	95	7. 환경 에너지 및 자원	8	18
8.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3	25	8. 건설, 사회기반시설분야	2	28
9. 식품분야	4	20	9. 디지털 콘텐츠 사업분야	12	37
			10.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	9	22
전체	117	497	전체	48	153

자료: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별표 1〉

- ● 현재 고시된 목록은 2015년 1월에 목록이 정비되어 고시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2012년 12월에 목록이 정비되었음
  - 〈표 2〉에서는 2008년 이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고시 목록을 정비한 내역을 정리하였음
  - 대체로 2년을 주기로 목록의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개정 시마다 일부 기술은 삭제되고, 일부 기술은 추가되거나 명칭이 수정됨
    - 2008년 개정 이후, 2010년 10월, 2012년 12월, 2014년 1월에 개정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 ● 최근에는 추가되는 기술보다 삭제되는 기술이 더 많음

- 2012년 12월의 개정에서는 86개 기술이 삭제되고, 33개 기술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 1월에는 78개 기술이 삭제되고 52개 기술이 추가되었음
- 한편, 2010년에는 추가된 기술이 더 많았고, 2008년에는 추가된 기술과 삭제된 기술이 각각 8개와 9개로 유사한 수준이었음

〈표 2〉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고시 목록 개정 연혁

개정시기	주요 내용	
2015. 1	52개 기술 추가	항공우주, 재료소재, 전자·정보, 의료기기, 식품분야 등
	78개 기술 삭제	재료소재, 식품, 자원개발 분야 등
	일부기술 명칭 수정	
2012. 12	33개 기술 추가	의료용 로봇, 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86개 기술 삭제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고도기술로 보기 힘든 기술
2010. 10	49개 기술 추가	연료전지 보조장치, 리튬이온 전지 셀 소재 및 응용, 식품소재 기술 등
	9개 기술 삭제	
2008. 8	8개 기술 추가	나노섬유, 대체물질 개발 및 응용기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기술 등
	9개 기술 삭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규정 개정연혁」, 2016. 6. 3 접속

●● 2015년 1월에 고시된 기술목록 개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원이 필요한 52개 첨단기술을 추가함
  - 고도기술수반사업: 항공·우주, 재료소재, 전자·정보, 의료기기, 식품분야 등에서 51개 기술 추가
  - 산업지원서비스업: 국제석유거래업 1건 추가
- 기술발전에 따라 보편화·진부화된 79개 기술을 삭제함(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적용)
  - 고도기술수반사업: 재료소재, 식품,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78개 기술 삭제
  - 산업지원서비스업: 자원개발분야의 1개 기술 삭제
- 현재 기술 환경 등을 반영하여 기술명칭 등 수정

### Ⅲ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과 주요 지원분야

#### 1.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실적

- ● <표 3>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산출세액과,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실적, 고도기술 등 감면실적을 정리하였음
  - A행은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기업 수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 산출세액을 정리한 것이며,
  - B행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 수와 감면액을 정리한 것임
  - C행은 B행의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중 증자 감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것임
    - 증자 감면의 경우 감면 항목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증자 감면을 제외한 감면을 기준으로 고도기술 등 감면의 비중을 살펴보는 데 이 행의 목적이 있음
    - 기업 수의 경우 단순하게 감면기업 수에서 증자 감면 기업 수를 차감한 것으로 신규투자 감면과 증자 감면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표에 나타난 수치보다 기업 수가 더 많을 수 있음
  - D행은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의 적용을 받은 기업 수와 감면세액을 정리한 것임
  - B/A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기업 수)과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산출, 감면세액)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 D/C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증자 감면 제외) 중에서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이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정리한 것임
- ● 외투법인 중에서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B/A)은 1.5% 내외임
  - 2012년 1.8%, 2013년 1.7%, 2014년 1.4%로 감면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를 보임
  - 외투기업 중 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가 적어서, 아주 소수의 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 감면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산출세액의 5% 내외 규모임
  - 2012년 5%, 2013년 5.9%, 2014년 4.3%
  - 감면액의 산출세액 대비 비율이 감면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큰데, 이는 소수의 기업이 비교적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표 3〉 외투기업 산출세액과 감면세액

(단위: 개, 백만원, %)

	2012		2013		2014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sup>1)</sup>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sup>1)</sup>	기업수	산출, 감면 세액 <sup>1)</sup>
외투기업 전체 (A)	7,699	8,755,200	7,931	6,087,794	8,002	5,561,935
감면기업(전체) (B)	141	438,378	134	361,605	116	236,499
증자 감면	28	217,570	27	202,296	18	56,496
감면(증자 제외)(C)	113	220,808	107	159,309	98	180,003
고도기술 등 (D)	75	140,827	71	115,629	63	123,318
B/A	1.8	5.0	1.7	5.9	1.4	4.3
D/C	66.4	63.8	66.4	72.6	64.3	68.5

주: 1) 외투기업 전체의 경우에는 산출세액,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표 12-2-1~3.

-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이 차지하는 비중(D/C)은 기업 수를 기준으로 65% 내외이며, 감면액 기준으로는 70% 내외임
  - 기업 수 기준 2012년 66.4%, 2013년 66.4%, 2014년 64.3%
  - 감면액 기준 2012년 63.8%, 2013년 72.6%, 2014년 68.5%
- ●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2012년 4,384억원에서 2013년 3,616억원, 2014년 2,365억원으로 2013년과 2014년에 전년 대비 17.5%, 34.6% 축소됨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도 2013년에는 1,156억원으로 2012년의 1,408억원 대비 17.9% 축소되었으나, 2014년에는 1,233억원으로 2013년에 비해 6.7% 증가하였음

## 2. 주요 지원분야

- ●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에서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 대상 기업의 주요 지원분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sup>1)</sup>
- ● <표 4>에서는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정리하였음
  -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총 246개의 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감면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87%인 214개가 고도기술수반사업이고, 13%인 32개가 산업지원서비스업임
    - 고시된 사업의 목록은 고도기술수반사업 497개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153개 사업으로 합하여 650개 사업임
- ● 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중 1개 분야와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는 2005~2013년의 8년 동안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이 없음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식품분야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어업 관련 분야, 광학·의료기기 분야, 수송분야,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 ● 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중 2개 분야와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이 기간에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은 각각 1~4개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4~1.6%임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광학·의료기기 분야, 건설·사회기반시설 분야
  -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엔지니어링 서비스, 신물질·정밀화학·생물산업, 디지털 콘텐츠 사업

1)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p.92~96.

〈표 4〉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감면기업 업종별 구분(2005~2013년)

(단위: 개,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업종구분	업체수	비중	업종구분	업체수	비중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85	34.6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10	4.1
			디지털 콘텐츠 사업	4	1.6
정밀기계, 신공정	21	8.5			
재료, 소재	34	13.8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17	6.9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4	1.6
광학, 의료기기 분야	2	0.8			
항공, 수송분야	33	13.4			
환경, 에너지, 자원	19	7.7			
건설, 사회기반시설	1	0.4			
			엔지니어링 서비스	4	1.6
			기타 산업지원서비스	10	4.1
미분류	2	0.8			
소계	214	87.0	소계	32	13.0
합계				246	100.0

자료: 안종석·정재호·최기호(2014), p.93

- ● 고도기술수반사업 중에서는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가 85개로 총 246개의 34.6%를 차지 하였음
  - 그 외에 재료·소재분야가 34개로 13.8%, 항공·수송분야가 33개로 13.4%를 차지하였음
  - 그 다음은 정밀기계·신공정분야, 환경·에너지·자원분야, 신물질·정밀화학·생물산업의 순임
- ● 산업지원서비스업 중에서는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와 기타 산업지원서비스분야가 각각 10개로 4.1%씩을 차지함

- 기타 산업지원서비스 분야에서는 주로 연구개발업과 교육훈련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감면승인을 받았음
- 산업지원서비스업에서 감면승인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은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임
  - 예, 관련 시설의 임대·유지·보수, 관련 종사자 교육, 관련 기술의 제공,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 IV 첨단기술에 대한 국내 다른 조세지원제도

- ● 국내 조세지원제도 중 첨단기술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써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는 당해연도에 지불한 비용의 20%를 세액공제함
-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원대상 기술과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지원대상 기술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별표 7>과 <별표 8>에서 규정함
- ● <표 5>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원대상기술 지정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는데, 12개 신성장동력산업에 76개의 기술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로 고시되었음
  - 신성장동력산업에는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소프트웨어, 탄소저감에너지, 고부가가치식품산업, 고도물처리산업, IT 융합, 첨단소재가공시스템이 포함됨
  - 각 산업분야별로 2~16개의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됨
    - IT융합 부문이 16개로 지원대상 기술이 가장 많고, 콘텐츠 소프트웨어산업 11개, 신재생에너지 산업 10개, LED 응용산업 9개, 바이오제약·의료기기산업 8개, 로봇 응용산업 6개, 신소재·나노 융합산업 5개 등임

〈표 5〉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지원대상기술 요약

(단위: 개)

구분	분야	기술수
1. LED 응용	가. 에코 LED	7
	나. 삭제 <2016.2.5.>	
	다. LED 감성/월빙 조명	2
2.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2
3. 로봇응용	가.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2
	나.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시스템	2
	다. 라이프케어 로봇	1
	라. 에듀테인먼트 로봇	1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가. 바이오 의약품	5
	나. 첨단 의료기기	2
	다. 스마트 헬스케어	1
5. 신소재나노융합	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1
	나. 기능성 나노필름	2
	다. 신소재	2
6.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전지	3
	나. 연료전지	1
	다. 청정석탄에너지	1
	라. 폐기물 에너지	1
	마. 풍력에너지	2
	바. 지열에너지	2
7. 콘텐츠 소프트웨어	가. 임베디드·시스템 소프트웨어	4
	나. 지능형 인터페이스	2
	다. 입체 영상·홀로그래피	3
	라. 문화콘텐츠	2
8. 탄소저감에너지	CCS (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포집 저장)	4

구분	분야	기술수
9. 고부가식품산업	가. 친환경 안심식품	1
	나. 기능성 식품	1
10. 고도물처리산업	상수관리 최적화	1
11. IT융합	가. 스마트 자동차	5
	나. 디지털 선박/조선	2
	다. 지능형 그린건설	2
	라. 지식기반 생산시스템	1
	마. 공통 핵심부품	1
	바. 착용형 스마트 기기	2
	사. 지능형 사물인터넷	1
	아. 지능형 무인항공기	1
12. 첨단소재가공시스템	가. 복합재 가공시스템	1
	나. 메탈 가공시스템	1
전체		76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 ● <표 6>에서는 원천기술 중 지원대상 기술을 정리하였는데, 17개 산업분야에 50개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고시됨
  - 금속, 생산기반, 섬유, 에너지효율 향상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1~5개의 기술이 고시됨
  - 금속분야와 원자력분야, 디스플레이 분야에 고시된 기술이 각각 5개씩으로 가장 많으며, 섬유, 화학공정, 화합물·의약품 분야에는 각각 4개의 기술이 지원대상으로 고시됨

〈표 6〉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요약

(단위: 개)

구분	분야	기술수
1. 금속	가. Smart Metal (스마트 금속)	1
	나. Green Process (친환경 공정)	2
	다. Energy Metal (에너지 금속)	2
2. 생산기반	가. 임계성능 생산기반	1
	나. 그린에너지 생산기반	2
3. 섬유	가. 건강복지 섬유	1
	나. 녹색환경 섬유	1
	다. 생각하는 섬유	1
	라. 융복합섬유	1
4. 에너지효율향상	가. 연료전지소재	1
	나. 이차전지	1
5. 삭제 <2016.2.5.>		
6.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2
7. 전력	가. 지능형전력계통 (Smart Grid)	1
	나. 지능형 배전기술	1
8. 원자력	가.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기술	1
	나. 원자력 재료	1
	다. 방사선 이용	1
	라. 신형원전(Advanced Power Reactor)	1
	마. 가압경수형 원전(Pressurized Water Reactor)	1
9. 지식정보보안	공통기반 보호	2
10. 청정기반	가. 유니소재	1
	나. 그린프린팅 제품	1
	다. 자원순환	1
11. 화학공정	가. 녹색 화학공정	3
	나. 인간친화성 소재	1
12. RFID-USN <sup>1)</sup>	가. Smart(지능형) 에너지관리	1
	나. Smart(지능형) Supply Chain(공급망 관리)	1
13. U(유비쿼터스)-컴퓨팅	가. 휴먼컴퓨팅	1
	나. 클라우드 컴퓨팅	1

구분	분야	기술수
14. 화합물 의약품	가. 혁신형 신약후보 물질	3
	나. 혁신형 개량신약	1
15. 우주	인공위성	2
	우주발사체	1
16. 디스플레이	가. AMOLED(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1
	나. 차세대 신공정 핵심장비 개발	1
	다. 신공정 핵심소재 개발	2
	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1
17. 반도체	반도체 소재	1
18. 조선	고부가가치선박	1
전체		50

주: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

## V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

-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제도임
  -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문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전반의 문제이지만, 그 조세지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음
  - 내국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고시된 사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공동투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음
  - 그러므로 내국인의 기술개발 및 고도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둘째,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대상 기술·업종을 고시하여 새로운 기술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성봉, 20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고시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개정 연혁을 보면 2008년 이후 예외 없이 2년에 한 번씩 개정됨
    - 개정할 때마다 일부 기술이 추가되고, 또 일부 기술이 삭제되긴 하지만 600개가 넘는 모든 기술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지, 새로운 기술은 적절히 추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매우 좁은 범위의 특정한 사업·기술을 고시하고 있어 새로 생성된 기술에 대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고시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여 거의 고시된 기술·업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조세지원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기술 소관부처의 검토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고, 규정상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장시간이 소요됨<sup>2)</sup>
- ● 참고로 고도기술 등으로 지정된 기술의 변화를 보면, 1999년에는 533개 기술이 지정되었는데, 2015년에 650개로 늘어남
  - 2년에 한 번 정도 기술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는데, 고시된 기술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기술도 계속해서 감면대상에 잔류하는 경향이 있음
    -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9년에 고시된 기술 중 2015년까지 잔류하고 있는 기술이 392건임
    - 즉, 2015년에 고시된 기술 중 60% 정도가 16년 동안 변화 없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 셋째,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의 특별한 전략이 없이 업종을 불문하고 고도기술에 초점을 맞춰 지정하여, 분야가 광범위하고 지정된 기술의 수가 많으며, 다른 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임
  - 2005~2013년의 기간 동안 총 246개의 업체(연평균 31개)가 감면 승인을 받았으며, 감면 혜택을 받는 업체가 매년 70개 내외인 데 비해 총 19개 분야(고도기술수반사업 9개 분야, 산업지원서비스업 10개 분야)의 650개 사업·기술이 지정됨<sup>3)</sup>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1항

3) 앞의 <표 1>, <표 3>, <표 4> 참조

- 지원실적은 ‘전자, 정보 및 전기분야’, ‘재료, 소재분야’, ‘항공, 수송분야’, ‘정밀기계, 신공정분야’, ‘환경, 에너지, 자원분야’,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분야’,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고, 다른 분야에는 지원 실적이 없거나 아주 소수의 업체만 감면 혜택을 받았음
  - 조세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원대상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 ●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 대상 기술과 국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지원대상 기술 지정분야를 비교하면 <표 7>과 같음
  - 신성장산업과 원천기술의 지원대상은 고도기술 중 지원실적이 많은 소수의 분야에 집중되는 데 비해, 외투감면 대상이 되는 고도기술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함
- ● 한편 지원규모를 보면, 연구·인력개발비 지원의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투자비용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데 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은 5년간 세액 전액, 그 후 2년간 20%이며, 감면한도는 투자액의 90%로서 감면규모가 상당히 큼<sup>4)</sup>
- ● 넷째, 고도기술 등에 대한 외투감면의 경우 다른 조세지원과 달리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것 외에 투자규모나 고용조건, 투자지역에 대한 조건이 없음
  - 단, 조세감면 한도는 감면기간 모두 합해서 외국인투자 규모의 90%인데, 그 중 40% 포인트는 고용 조건을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음
    - 고용기준 한도는 상시근로자 수와,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청년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근로자 수에 의해 결정됨
  - 한편 다른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는 투자지역, 업종, 투자규모 등에 제약이 있음
    -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표 7〉 첨단기술 고시 내용의 비교 - 분야와 기술 수

(단위: 개)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1. 전자, 정보 및 전기	92+17	1. LED 응용	7	2. 생산기반	2
2. 디지털 콘텐츠 사업	37	7. 콘텐츠 소프트웨어	11	9. 지식정보보안	2
		11. IT융합	16	10. 청정기반	1
				12. RFID-USN	2
				13. U-컴퓨팅	2
				16. 디스플레이	5
				17. 반도체	1
3. 정밀기계, 신공정	71	3. 로봇응용	6		
4. 재료, 소재	77	5. 신소재나노융합	5	1. 금속	5
		12. 첨단소재가공시스템	2	3. 섬유	4
				10. 청정기반	2
5. 신물질, 정밀화학, 생물산업	47+12	4. 바이오제약·의료기기	8	11. 화학공정	4
				14. 화합물약품	4
6. 광학, 의료기기	15+2				
7. 항공, 우주, 수송	55+3	2. 그린수송시스템	2	15. 우주	3
				18. 조선	1
8. 환경 에너지 및 자원	95+18	6. 신재생에너지	10	2. 생산기반	1
		8. 탄소저감에너지	4	4. 에너지효율향상	2
		10. 고도물처리산업	1	6. 자원	2
				7. 전력	2
				8. 원자력	5
9. 건설, 사회기반시설	25+28				
10. 식품	20	9. 고부가식품산업	2		
11. 엔지니어링 서비스	11				
12. 어업 관련 분야	3				
14. 기타 산업지원서비스업	22				
전체 (497+153)	650	전체	76	전체	50

주: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a)+(b)의 형태로 표시된 것은 앞의 것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뒤의 것은 산업지원서비스업, 음영표시한 부분은 산업지원서비스업을 나타냄

자료: 〈표 1〉, 〈표 5〉, 〈표 6〉

- ● 다섯째, 감면소득을 고도기술 등을 수반한 사업의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평가됨
  - 중간재 생산단계에서 고도기술이 사용되는 경우, 중간재의 최종재에 대한 기여도 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불확실성이 큼
    - 실무상 최종재의 소득을 중간재와 최종재의 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중간재가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중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기도 함

## VI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 앞서 정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첫째, 특별한 원칙 없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업정책적인 측면, 다른 조세지원제도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택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 이 경우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건을 연계함으로써 지원대상이 되는 기술 선정의 역량이 제고되어 일관성 있고 신속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 둘째, 이러한 개편과 함께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을 신성장동력산업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면 특정 기술과 연계된 사업을 분리 산정하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 셋째,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규모,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① 외국인투자지역제도나 다른 외투법인 지원제도와 같이 업종별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 ② 기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를 심의하여 그때그때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음
- ● 위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음
  - 제도의 투명성, 간편성 등의 관점에서는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①번이 우월함
  - 한편, ①의 문제점은 투자규모 등의 조건을 결정하기에 따라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무의미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임
    - 기술 등에 대한 조건을 강하게 부여한 상태에서 투자규모, 고용규모 등에 대해 강하게 제약을 하면,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들여와 시너지효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요건, 고용요건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규정하여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크게 의미 있는 제한은 되지 못할 것임
  - ②번과 같이 심의하여 선정하는 방안은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자칫하면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심의에서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심의회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 투자규모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와 동등하게 7년형 감면이 적용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를 비교해 보면,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이 더 제한적임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는 투자규모가 대규모여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상 업종은 광범위하게 규정됨
    - 한편 고도기술 등 외투기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향으로 개편하면, 신성장동력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적용대상이 상당히 제한됨
  - 그러므로 고도기술 등 외투감면에 대한 투자규모를 제한할 때,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적용되는 투자규모 제한보다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감면기간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이 짧은 5년형 감면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규모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제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참고문헌 |

---

- 강성태·전병욱,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치는 비조세변수의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12, pp.163~18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안종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15.
- 안종석·정재호·최기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평가 및 정비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안종석·최준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성과 및 향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8.
- 이성봉,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논총』, 제28권 1호, 2010, pp.97~119.
- 전태영·변용환,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0, pp.115~136.
- 최기호,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4.
- Zao, James and Victor Chang, “Transfer Pricing and ‘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s’ in China: What you need to know,” Tax Analysis Issue P193/2014, Deloitte, 10 July 2014.
- OECD/G20 BEPS Project, *Executive Summaries: 2015 Final Reports*, OECD, 2015.



**BRIEF**

---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2016. 8. 26(통권 제34호)

---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주)참기획
-



